2013도4782 A시장 뇌물수수사건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A시장이 시장에 당선되기 전 지방선거과정에서 관내이전을 추진중인 기업의 대표자로부터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 및 관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권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A시 소재 기업의 대표자로부터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3도4782 판결).

I. 사안의 내용

1. 공소사실의 요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A시장으로 당선되었음.
 - □ 피고인은 2006. 5. 하순경 A시로 기업이전을 추진중이던 ㈜B의 대표의 대표 C로부터 ㈜B에 대하여 보조금의 신속한 지급을 포함한 기업이전과정에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편의제공을 청탁 받고,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음.
- 2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 □ 피고인은 2010. 5. 하순경 위 C로부터 "B에 대한 행정조치, B의 부지매각에 대한 협조, 보조금 환수 지연과 관련한 편의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2010. 6. 2.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교부받았음.

- **③**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 2007. 10. 7. D으로부터 "A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달라"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처형인 피고인 E를 통하여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음.

2. 1심의 판단

□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 다 징역 5년, 추징 9,000만 원 선고

3. 항소심의 판단

- □ 일부 무죄, 일부 유죄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 추징 1,000만 원 선고
- 장소사실 부분 → 무죄
 - □ C가 피고인에게 '보조금의 신속한 지급'을 청탁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C가 피고인에게 묵시적으로 청탁을 했다고 해도 이러한 청탁이 사전수뢰죄에서 말하는 구체적 청탁이라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 ② 공소사실 부분 ➡ 유죄
 - □ 피고인이 C로부터 건네받은 돈은 선거 자금으로서 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서의 성격으로 건네진 것이라고 보아 유죄로 판단.
- ❸ 공소사실 부분 ➡ 무죄
 - □ 공여자인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은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4.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

□ 피고인은 유죄부분(공소사실❷)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부분(공소사실 ❶, ❸)부분 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음.

Π. 판결 결과 및 판시 사항

□ 피고인 및 검사 상고 모두 기각

- □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이 현직 시장의 지위에서 C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수긍함.
- □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공소사실 ●과 관련하여 기업이전 과정에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사전수뢰죄에서의 구체적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 및 공소사실 ❸과 관련하여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함.

Ⅲ. 이 판결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장인 현직시장이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대표로부터 기업에 대한 행정적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재선을 위한 선거기간 중에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치자금법 위반죄 외에 별도로 뇌물죄가 성립함을 분명히 하였음.
- 반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2항(사전수뢰죄)에서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직 시장이 아닌 시장후보자가 지방자치 선거기간 중에 돈을 수수한 행위를 사전수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당선된 후의 직무에 관하여 구체적 청탁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의 법리를 따른 것임.